# 政府機關內 造景職 設置에 따른 法理와 法制에 대한 硏究

申益淳

湖南大學校 都市造景學部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within the Government Office

Shin, Ick-Soon

Faculty of Urban and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 ABSTRACT

There is no official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n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which will carry out the works of the special landscape architectural interest and create the new services with other interested government office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s the deman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which has 5 types(urban planning, architecture, land register, land surveying, civil work) of the special groups to official organization by changing the 1 article of the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2. Theories of law of equality for everyone(the Constitution of Korea : §11(1)), the rights of having pleasant residential life(the Constitution of Korea : §35(3)) and the national duty of employment increase(the Constitution of Korea : §32(1)) are reviewed to provide the legal reasons of establishing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3. With the addition of new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t could expand the areas of landscape architects by adding new landscape architectural subjects into official examinations for government employees. Also it is necessary to exempt the test for those who have licenses and to give additional points in evaluation their works at the end of year to the people who have licenses.

4. The reasons for the creation of new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nto the present official organization are acquired from the derivation of 23 present regulations referring to the landscape architects, the existenc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belonging to the Metropolis of Seoul, and the favorabl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organization.

Hereafter the lawyers should be cooperated with landscape architects to initiate the related principles of law,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in detail to establish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Key Words :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Constitution of Korea, present regulations, principles of law*

## Ⅰ. 序論

### 1. 硏究背景과 目的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서의 경제의 발전은 필수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대두시킬 전망이다. 국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창조를 목표로 하는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는 국내에서 1970년대 초 하나의 독립적 기술분야로 형성된 후, 관련 학제, 업계, 각종 단체 등이 설치되어 현행 법제도권내에서 그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그 중 조경관련 행정업무는 이미 양적 팽창 뿐만 아니라 질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타 직종의 인력에 의한 조경분야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그 전문성의 간과에 따른 시행착오와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의 현행 직제에 조경직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로써,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경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공무원 직급상의 조경직제 설치는 21세기 국토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다.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에서는 1998년 12월 현재 '조경직제추진위원회' 를 통한 조경직제 신설의 실무적인 절차를 수행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기관내 조경직 설치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의 개정 요구에 따른 관련 법리와 법제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헌법과 대한민국현행법령집(법제처, 1998)에 나타난 현행(1998.11.30 현재) 법률들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조경직제신설을 위한 절차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硏究史

국내에서의 조경직제 신설요구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극히 미약한 상태로 판단되며, 특히 관련 법조문분석과 같은 법이론적 측면의 접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조경직제 신설의 필요성을 국내외 사례를 들어 주장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인재(1994, 52)는 정부행정조직에서 조경직은 반드시 신설되어야하며, 조경분야업무를 다루고 있는 건설부 녹지공원과, 환경처 자연생태과, 산림청 자원조성과 및 시·도의 공원녹지과 등이 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신익순(1997, 203)은 조경기술자와 관련하여 공무원 직급상의 조경직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철규(1996, 88-93)는 '독일 조경직을 통해 본 국내 조경직설치의 필요성' 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대한 사업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리정부 행정기구내에 '조경직' 을 설치해야한다라고 하였다. 김승환(1993)은 '일본의 조경 관련 행정 및 제도' 에서 일본의 공무원상 조경전문직의 존재를 소개하였고, 박문호(1996, 94-97)는 '일본의 조경 관련 기구 및 조직' 에서 30여년 전부터 전문적인 행정분야로서 문호가 열려 있던 일본도 오늘날에는 사회적, 기술적으로 변화해 가는 행정적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적인 행정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도 기존 조직 개편이나 조경관련 직제 신설을 통하여 조경관련 행정 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여 수준 높은 행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식(1996, 98-99)은 '미국 조경공무원의 역할'에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각 주의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조경공무원들은 모든 새로운 개발이나 공사현장에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 Ⅱ. 造景職 新設의 法的 根據 및 過程

### 1. 現行 技術關聯 公務員 職級과 關聯된 法律

조경직제 신설 요구에 따른 법제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단적으로 말해서 대통령령인 현행 '공무원임용령'의 1개 조항을 개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동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라는 조항에 따라 현행 기술 관련 공무원의 직급은 표1(3개 직군: 농림수산·시설·환경, 7개 직렬, 9개 직류)과 같으며, 기술 관련 공무원의 직급내의 3개 직군(농림수산, 시설, 환경) 중의 시설직군은 5개 직렬(도시계획, 건축, 지적, 측지, 토목)로 되어 있는 바, 본 시설직군상에 조경직렬과 조경직류를 추가 신설할 것(표2)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표 1. 현행 기술 관련 공무원 직급

| 직군 | 직렬 | 직류 |
|---|---|---|
| 농림수산 | 임업 | 일반임업 |
| | | 산림보호 |
| 시설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 건축 | 건축 |
| | 지적 | 지적 |
| | 측지 | 측지 |
| | 토목 | 일반토목 |
| | | 농업토목 |
| 환경 | 환경 | 일반환경 |

표 2. 조경식 신설 요구안

| 직군 | 직렬 | 직류 |
|---|---|---|
| 시설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 건축 | 건축 |
| | **조경** | **조경** |
| | 지적 | 지적 |
| | 측지 | 측지 |
| | 토목 | 일반토목 |
| | | 농업토목 |

### 2. 公務員 轉職 關聯 法律

조경직제가 신설되었을 경우 현재 조경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타 직렬의 공무원들이 조경직렬로 轉職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3장(전직, 제29조, 제30조)에 의거한다. 즉, 동령 제29조(전직의 요건) 제1항에 명시된 전직의 4가지 요건중 제2호의 내용인 '직제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으며, 동령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의 제3호의 내용인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시설직군)내에서 직무내용(조경직무)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와 제4호의 내용인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조경기사 및 조경기술사 자격)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조경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전직을 원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전직시험 없이 조경직급으로 전직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다.

수년 전 '도시계획직'이 신설되었을 당시 도시계획직으로의 전직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은 실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숫적 미약으로 인한 결과로 짐작되나, 조경직 신설의 경우는 현행 행정부서상에 나타나 있는 서울시 공원녹지과와 조경과의 존재에서와 같은 예처럼 조경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조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업, 토목 등의 직렬을 가진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조경직렬로 전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조경직급신설에 따른 신규임용자와 기존공무원들과의 갈등은 우려할 바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3. 行政立法(大統領令)의 改正節次

본 연구의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임용령' 은 행정입법의 일종이며, 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성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입법은 대외적·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 과 특별권력관계 또는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규율에 그치는 '행정명령' 으로 구분되며, 본 공무원임용령은 법규명령이면서 법형식에 따라 대통령령에 속한다. 법규명령의 일종인 대통령령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가능·명백한 내용을 소정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성립되며, 시행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89조 제3호(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및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법제처의 소관사무)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은 대통령령의 개정절차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1] 법령안은 20일 이상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예고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인 바, 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개정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개정하게 된다. 이처럼 개정된 대통령령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절차를 취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된다(이상규, 1993: 289-301).

## Ⅲ. 造景職 設置를 위한 憲法上의 法理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김철수, 1993:12). 민주국가로서의 입헌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결의에 의한 헌법을 권리의 최우선 명제로 삼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국민을 구속하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수 많은 객체 중의 하나로서의 조경이라는 지위 역시 바로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의 원칙' 에 따라 헌법에 의해 소중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1987.10.29 개정 공포)을 기준으로 하여 조경직 설치를 위한 헌법상의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法앞의 平等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평등의 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恣意 금지이다.

현행 건축, 토목, 도시계획으로 국한된 공무원시설직군중에는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조경전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렬, 직류도 신설됨으로써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따른 기회균등의 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무처 민원실 담당자 앞으로 보낸 1995년 10월 14일자 '전국조경학과학생연합회' 명의의 공문인 공무원조경직종신설요구에 대한 총무처장관 명의의 민원회신 답변인 문서번호 인기 12107-542(1995.11.10)상의 '현재 국가에서 수행하는 조경관련업무는 주로 건축, 도시계획, 환경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서 동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도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직렬신설시 예상되는 타 직렬과의 승진 불균형·인사운영의 경직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별도의 직렬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은 당시의 조경업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총무처의 恣意的인 해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제1항의 조항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는 조경의 영역이 법조문에 명시화되어 [2] 있으므로 조경이 독자

1 조경직제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사항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법령안이므로 20일 이상의 예고와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 : '건설공사' 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물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 등을 말한다. → 국회법인 법률위상에 조경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음.

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당시의 총무처 답변은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 2. 快適한 住居生活權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거는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이고 사회의 기본적 조직단위인 가정의 근거지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의 내용중의 일부로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현행의 조경업무[3]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상에 조경직을 신설하는 것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 합치된다.

### 3. 國家의 雇傭增進의 義務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할 입법과 고용확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방법이란 사회정책에 의한 고용의 증진을 말하고, 경제적 방법이란 경제정책에 의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말하는데 사회적 방법의 일종인 조경직제 신설을 통하여 조경관련 근로자들이 공무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합치된다.

## Ⅳ. 造景職 관련 現行 法條文

조경기본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직제상 조경분야가 미포함된 현행 법제 하에서 조경직제와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각종 실정법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조경전문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조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그 내용을 네 가지 항목 즉, 조경기술자를 제도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법률,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조경학 과목을 포함시키거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조경기술자자격 취득자의 특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공무원평정시 조경기술자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국가기관의 조경관리 담당자를 명시한 법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造景技術者를 制度圈 內에서 直接的으로 受容하고 있는 法律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8호: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별표1)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3호: 조경관련 건설기술자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건설기술자로서의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급 및 조경기사2급 자격취득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조경기술자로서의 전공학과와 경력내용에 따른

3 조경의 학문적 정의.조경이란 토지에 관련된 설계, 계획 및 관리의 기술이며, 자원의 보전과 관리경영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과학적인 요소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환경이 유효하고도 유쾌하게 조성되도록 창조하는 기술이다.-1974.11, 미국조경학회평의원회(ASLA: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Board of trustees)의 조경에 대한 정의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기술자로 구성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조경기술사 또는 조경특급기술자는 14시간 이상, 조경기사1급 · 조경기사2급은 2주 이상, 조경고급기술자, 조경중급기술자 및 조경초급기술자는 1주 이상의 교육훈련기간이 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기술자격)

별표1(기술계의 기술분야 및 등급 · 종목): 조경관련 기술계자격은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술사, 조경기사1급 및 조경기사2급이다.[4)]

별표2(기능계의 기술분야 및 등급 · 종목): 조경관련 기능계자격은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능사2급과 조경기능사보이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5조(검정의 시험과목)별표4(기술계 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조경관련 기술자격 시험과목은 필기 및 면접시험을 치르는 조경기술사의 경우는 환경보전, 산림보전, 공원녹지, 공지, 조경 및 도시경관 등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조경기사1급 · 2급의 경우는 필기시험과목으로는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조경기사2급의 경우는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및 조경관리론이며 실기시험으로 조경설계 및 시공실무를 검정한다.

[기술사법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별표1(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 건설부문의 기술범위 16항에 조경이 명시되어 있다.

[산림법시행령]

제14조(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1호(임업지도사)가목,2호(임업지도원)가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동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할 임업기술지도원중의 임업지도사가 될 수 있고, 실무경력 없이 조경기사2급이상의 자격만 가진 자는 임업지도원이 될 수 있다.

제45조1항1호(조림용 종 · 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나목: 농업직 또는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조경분야에 5년이상 근무하고 종 · 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목: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의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 · 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라목: 고등학교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 · 묘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임업협동조합법]

제2조2호(산림경영자의 정의): 산림경영자의 업무중에는 조경목(가로수 · 관상수를 포함)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1항(종류 및 담당 업무)4호(조경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총11종)중의 조경기술자는 전통조경의 계획과 시공, 이에 따른 원형고증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13호(조경공): 문화재수리기능자(총17종)중에 조경공이 포함된다.

제8조의2(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의 대상)2호(조경기술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직군중 임업직렬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직공무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9조별표7(안전 · 위생기준)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가목(골프장업의 코스관리요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코스관리요원의 업무중에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의 식재 · 재배업무가 포함된다.

[내무부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인력자원 관리직종)9호(토목분야): 조경기사1급(직종기호 09-09, 직종명칭 조경기술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대상자원인 인력자원에 해당된다.

4 본 조경기술자격 구분은 1998년5월9일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령(시행: 1999.3.28)에 의해 조경1,2급기사 자격제도가 폐지되고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및 조경기능사 등의 4종류로 대체되었다.

## 2. 各種 公務員任用試驗에 造景學 科目을 包含시키거나 轉職試驗이 免除되는 造景技術者資格 取得者의 特典을 規定하고 있는 法律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시험과목)1항별표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표)1호(연구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 임업연구직렬·임업직류의 연구관 및 연구사의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의 택일과목중에 조경학이 포함되며, 동직렬·직류의 연구사의 특채·전직 2차시험 선택과목의 택일과목중에 조경학이 포함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1항별표1(각종임용시험과목표): 임업직렬·일반임업직류의 5·6·7급의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의 택일과목중에 조경학이 포함된다.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2호다목, 3호가목 별표1의2(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농업연구직렬·원예직류와 임업연구직렬·임업직류의 연구관·연구사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의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중에 조경학을 전공한 자가 포함된다.

제6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1항, 제6조의2(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2항 별표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호(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농촌생활직류, 농공연구직렬·농공직류 및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면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증 중에 연구관의 경우에는 조경기술사자격증이 포함되며, 연구사의 경우에는 조경기사1급자격증이 포함된다.

2호(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농업토목직류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면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증 중에 지도관의 경우에는 조경기술사자격증이 포함되며, 지도사의 경우에는 조경기사1급자격증이 포함된다 .

제6조의2(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1항별표8(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환경직렬·일반환경직류. 교통직렬·교통시설직류·도시교통설계직류, 도시계획직렬·도시계획직류 및 토목직렬·일반토목직류·농업토목직류의 전직시험의 면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증 중에 5급이상인 경우는 조경기술사, 6·7급인 경우는 조경기사1급. 8·9급인 경우에는 조경기사2급 자격증이 포함된다.

제12조의3(채용시험의 특전)별표12(6급이하(연구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농공연구직렬·농공직류, 토목직렬·일반토목직류·농업토목직류, 농촌지도직렬·농업토목직류의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증인 조경기술사자격증과 조경기사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 비율(본규칙 별표11, 2호)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환경직렬·일반환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 교통직렬·교통시설직류·도시교통설계직류, 도시계획직렬·도시계획직류의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증인 조경기술사자격증과 조경기사1·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기능계자격증인 조경기능사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 비율(본규칙 별표11, 2호)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2항별표1(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중 조경과목):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 및 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중에 조경과목이 포함된다.

3항별표2(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농업계열의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중에 조경과목이 포함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1항별표7(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과목표): 임업직렬·일반임업직류의 지방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2차시험 선택과목의 택일과목중에 조경학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15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1항2호별표3(임용

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헌법재판소공무원에 특별채용하는 때에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2항2호)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인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에 조경기술사는 5급이상, 조경기사1급은 6・7급, 조경기사2급은 8・9급에의 임용예정이 가능하다.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7조(시험과목)1항별표1(직급별 각종시험 과목표)5항: 농림직군・농림직렬・농림직류의 5급이상 공채, 5급이상 특채・전직 및 5급 일반승진, 6・7급 공채 및 6・7급 특채・전직의 2차시험의 선택과목의 택일과목중에 조경학이 포함된다.

제24조1항(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등)별표4(임용예정등급별 자격증): 조경기능사2급자격증 소지자는 원예직군・원예직렬・원예직류의 10등급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7조별표2의2(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표)토목직렬・일반토목직류(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별표13: 동일) 및 농림직렬・임업직류의 5급이상은 조경기술사, 6・7급은 조경기사1급, 8・9급은 조경기사2급자격증이 있으면 전직시험이 면제된다.

제38조(채용시험의 특전)2항별표9의3(토목직렬・일반토목직류의 6급이하 기술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자격증인 조경기술사 및 조경기사1・2급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이내를 최고점으로 일정 비율(본규정 별표9의3)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별표13: 동일).

### 3. 公務員評定시 造景技術者資格證 所有者에게 加算點을 附與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는 法律

[공무원평정규칙,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자격증등의 가점)1항2호(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1항별표3・4・5,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1항별표3・4・5 : 이하 동일)

별표3(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일반직)별표5(자격증등급별가산점): 임업・환경・교통・도시계획・토목직렬의 5급공무원이 조경기술사자격증(6・7급: 조경기사1급, 8・9급: 조경기사2급)을 보유할 경우, 농업연구・농공연구・환경연구직렬의 연구사가 조경기술사 및 조경기사1급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및 농촌지도・생활지도직렬의 지도사가 조경기술사 및 조경기사1급자격증을 보유할 경우에는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5점,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25점의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별표4(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기능직)별표5(자격증등급별가산점): 토목 및 철도 현업의 토목분야・건축 및 철도 현업의 건축분야・농림직렬의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이 조경기술사 및 조경기사1급자격증(8등급이하: 조경기사2급)을 보유할 경우에는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5점,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25점의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국회공무원평정규정,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자격증등의 가점)1항2호별표4(자격증등급별가산점)별표5(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일반직 토목직렬(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1항2호별표3,4,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 규칙 제23조1항2호별표5,6 : 동일) 및 농림직렬의 5급공무원이 조경기술사 자격증(6・7급: 조경기사1급, 8・9급: 조경기사2급)을 보유할 경우와 기능직 토목분야(농림: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1항2호별표5,6 : 동일)직렬(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1항2호별표3,4: 동일)의 7등급이상공무원이 조경기술사 또는 조경기사1급 자격증(8등급이하: 조경기사2급)을 보유할 경우에는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5점,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25점의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4. 國家機關의 造景管理 擔當者를 明示한 法律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5조(시설관리국)2항(관리과의 업무분장): 캠퍼스 조경업무는 서기관인 관리과장이 담당한다.

[국회청사방화규정]

제4조(방화책임자와 임무)1항7호: 국회청사내 온실의 방화책임자로 시설설비과 소속의 조경원예 담당자를 임명한다.

## Ⅴ. 公務員 職級上의 造景職制 新設의 當爲性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기술 관련 공무원 직급은 3개 직군(농림수산, 시설, 환경), 7개 직렬, 9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시설직군은 도시계획, 건축, 지적, 측지 및 토목 등 5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1항별표1).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술사법' 등에서 시설직군의 5개 직렬전공과 동일하게 '조경' 전공과 관련된 기술자격이 언급되어 있고, 조경기술자를 제도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산림법시행령', '임업협동조합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등의 법률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조경학과목을 포함시키거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조경기술자 자격 취득자의 특전을 규정하고 있는 7종의 법규 및 공무원 평정시 조경기술자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6종의 법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조경관리 담당자를 명시한 법규로서 '서울대학교설치령'(§15)과 '국회청사방화규정'(§4조)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규상의 조경기술자와 관련된 24여종의 법규(Ⅳ장 참조)와 서울특별시본청 공원녹지기획관 조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조경기획계, 조경시설계와 조경관리계의 존재는 위의 '공무원임용령' 상의 5개 시설직군에 조경직렬과 조경직류를 추가 신설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근거 역할로 볼 수 있다.

조경직 설치를 위한 여러 법적 근거 외에도 정부투자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개발 또는 발전 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등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국·공영업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전문직이 전문성을 가진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1998년 11월 30일 현재 전국 36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학과정과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229개의 조경일반건설업체, 1,152개의 조경전문건설업체 등의 활동은 조경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므로 공무원 직급상의 조경직제 신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최근 별도 진행된 설문지(대상: 조경전문가 46명, 설문기간: 1997.5.20~1997.6.10)에 제시된 공무원 직급상의 조경직제 신설요구에 대해 '절대긍정'이 91.3%, '긍정'이 8.7%로 조경전문가집단의 100%가 찬성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신익순, 1997: 203) 향후 조경직제신설은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며, 공무원 조직상 조경업무는 조경전공자가 담당해야지 조경비전공자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관여하는 현재의 일반적 추세는 지양되어져야 하겠다. 정부중앙기관인 '건설교통부'에도 조경직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비약적인 의견도 있었다.

## Ⅵ. 結論

21세기 삶의 질 향상, 도시민의 생산성 제고, 레크레이션 여가활동 기회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및 국제 정치적 'globalization' 상의 환경보전의 강조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행정부의 정치관이 조경업무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직제는 과거 1960년대 농림 우선 시대의 직제로서 각종 조경업무가 대부분 임업직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조림의 목적을 중요시하는 임업분야에서 인간의 쾌적성 추구를 위한 수목의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현상이므로 21세기의 행정력강화 차원에서도 조경직렬이 신설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시대를 맞아 인접 각 부처간의 활동을 활

성화시켜야 되리라고 보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직 신설의 법적 근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 의 1개 조항을 개정하여 기술 관련 공무원의 시설직군의 5개 직렬(도시계획, 건축, 지적, 측지, 토목)에 조경직렬과 조경직류를 추가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둘째, 조경직 설치를 위한 헌법상의 법리로서 법앞의 평등(헌법 제11조제1항). 쾌적한 주거생활권(헌법 제35조제3항) 및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헌법 제32조제1항) 등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조경직 관련 현행 법조문으로서 조경기술자를 제도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법률,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조경학 과목을 포함시키거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조경기술자자격 취득자의 특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공무원평정시 조경기술자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국가기관의 조경관리 담당자를 명시한 법률 등의 다수 규정들에 나타난 법조문들을 들 수 있다.

넷째, 공무원 직급상의 조경직제 신설의 당위성으로서 현행법규상의 조경기술자와 관련된 24여종의 법규들과 서울특별시본청 공원녹지기획관 조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조경기획계, 조경시설계와 조경관리계의 존재 및 설문지에 제시된 공무원 직급상의 조경직제 신설요구에 대한 조경전문가집단 100%의 찬성 의견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한 본 연구가 조경직제신설을 위한 준비단계와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연과학자로서의 사회과학분야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의 법리연구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 사고(legal mind)를 중요시하는 법률전공자들(lawyers)과의 합동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리 및 법제연구가 수행되어져야만 되리라고 관단된다.

## 引用文獻


1. 권오준(1993) 조경 관련 법규 개정과 당면과제. 한국조경학회지 21(1) : 149-152.
2. 권오준 외 2인(1995) 환경설계관계법규. 서울 동별당.
3. 김동식(1996) 미국 조경공무원의 역할. 환경과 조경 제103호.
4. 김승환(1993) 일본의 조경 관련 행정 및 제도. 환경과 조경 제623호.
5. 김완묵(1994) 도시조경관광법규집. 서울: 법전공사.
6. 김철수(1993)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7. 박문호(1996) 일본의 조경 관련 기구 및 조직. 환경과 조경 제103호.
8. 박인제(1994) 조경전문기술분야의 특화방안과 정책방향. 한국조경사회 94 추계심포지움 초록집. pp.39-55.
9. 법제처 편찬(1998) 대한민국현행법령집(전50권; 1998.11 30 제101회 추록).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0. 신용모(1987) 조경 관련 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논문.
11. 신익순(1997) 국내 · 외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이병태(1993) 신법률용어사전. 서울: 법문출판사
13. 이상규(1993) 신행정법론(상). 서울: 법문사.
14. 조상원 편(1993) 소법전. 서울: 현암사.
15. 지철규(1996) 독일 조경작을 통해 본 국내 조경직설치의 필요성. 환경과 조경 제103호.
16. Baker H Morrow(1987) A dictionary of landscape architecture. New Mexico: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7. *Bruce G. Sharky(1994) Ready, Set, Practice -Elements of* Landscape Architecture Professional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8 Donald G. Hagmam, Julian Conrad Juergensmeyer(1986) Urban planning and land development control law(second *edition)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St. Paul*
19. James Acret(1995) California construction law manual(contractor' s edition 1995). Colorado: McGraw-Hill, Inc..
20. J.D.C. Harte(1985) Landscape, land use and the law. London· E. & F.N. Spon Ltd..
21 Richard C. Smardon 외 1인(1993) The Legal Landscap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22 都市計劃法制研究會(1991) 都市計劃法令要覽 東京都 (株) ぎょうせい.